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 상향〉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61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형수 · 엄태영 · 조정훈 · 임이자 · 김도읍 · 김대식
서지영 · 권영진 · 김성원 · 구자근 · 윤영석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5. 2. 7.

3. 회 부 일 : 2025. 2. 10.

※ 의안번호 : 796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전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전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게 되어 안전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전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전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정수를 ‘6명’에서 ‘8명’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② (생략)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u>6명</u> 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 ----- ----- <u>8명</u> ----- ----- ----- -----.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안전조정제도는 여야 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한 쟁점 안전에 대하여 여야 간의 숙의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소위 ‘국회선진화법’(2012. 5. 시행)을 통해 도입되었음.

현행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조정위원 총 6인 중 3인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으로, 나머지 3인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으로 함.

회부된 안전에 대한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4인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표-2] 안전조정위원회 개요

구 분	주요내용
구성목적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을 심사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제·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
구성절차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
활동기한	구성일로부터 90일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6인 -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 -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이외의 위원: 3인
조정안 의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표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전을 표결

이와 관련하여,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이외의 위원 1인만 찬성자로 확보하면 의결정족수(4인 이상)를 쉽게 충족할 수 있어, 제도의 도입 취지인 충분한 협의나 조정이 없이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¹⁾.

1) 참고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2022헌라2)’에서 재판관 5인의 의견(전부인용 4인, 일부인용 1인)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대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①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②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5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음.

개정안은 조정위원 정수를 6인에서 8인으로 상향하여 의결정족수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역시 ‘4명 이상 찬성’에서 ‘6명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4인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이외의 위원 2인을 확보하여야 개정안의 의결이 가능하므로,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비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타협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3]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정위원 구성 및 의결정족수의 비교

구 분		현행법	개정안
조정 위원	제1교섭단체	3인	4인
	제2교섭단체	3인	4인
	기타(제3·4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총계	6인	8인
의결정족수(재적위원 2/3 이상)		4인 (3인+1인)	6인 (4인+2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인용의견 중 일부(재판관 4인(전부인용) 중 발췌) >

- 위와 같은 ○○○ 위원의 탈당 과정과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조정위원 선임과정 및 법사위 위원 구성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 위원은 법사위에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되어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하여 민주당을 탈당하였고 같은 당 소속으로 ○○○ 위원과 함께 그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찬성자로 참여하였던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이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
-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위와 같이 회의의 주재자로서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그 위원회 활동의 일부인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두었고 조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질의토론이 모두 생략되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의결된 개정안에 대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나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 개정안의 내용 그대로 이 사건 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다.
- 이는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수와 그렇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을 위반한 것이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 3명과 ○○○ 위원만으로 재적 조정위원 6명의 3분의2인 4명이 충족되도록 함으로써 국회 내 다수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의 기능을 형해화한 것이며 위원회의 안건심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회법 제58조도 위반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이를 통해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법사위 법안심사에서의 실질적인 토론의 기회를 형해화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제49조도 위반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그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조정안 의결 정족수의 강화로 안건 처리 및 이견 조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점²⁾, 위원 정수가 가장 적은 정보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 대다수가 조정위원회에 속하게 된다는 점³⁾ 등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14

2) 한편, 비(非)다수당에게 안건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상당한 주도권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임. (이구형,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3)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최소 12명(정보위원회), 최대 30명(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임.

구 분	위원 정수	구 분	위원 정수
국회운영위원회	28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법제사법위원회	18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정무위원회	24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명
기획재정위원회	26명	보건복지위원회	24명
교육위원회	16명	환경노동위원회	16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국토교통위원회	30명
외교통일위원회	21명	정보위원회	12명
국방위원회	17명	여성가족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22명		